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1519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준형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214,437원 및 그 중 4,920,034원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1. 9.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6. 25. D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D 주식회사는 2015. 12. 9.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11. 28. E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21. 11. 16. 기준 피고 B의 채무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대출과목	원금잔액	비용잔액	인수전 이자잔액	인수후 이자잔액	합 계
무담보대출	4,920,034	0	5,973,511	5,320,892	16,214,437
합 계	4,920,034	0	5,973,511	5,320,892	16,214,437

라. 한편 피고 B의 어머니이자 피고 C의 처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7. 26.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마.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21. 9. 6.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1/2 지분을 피고 C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2021. 9. 8.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원리금 16,214,437원 및 그 중 원금 4,920,034원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고 B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 중 자신의 상속지분(2/5)에 해당하는 1/5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C에게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5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부가 한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그 당시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C은 1974. 1. 15. 망인과 혼인하여 망인의 사망 시까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2. 31. 피고 C과 망인이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피고 C은 망인이 사망한 후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C과 망인이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이 실질적으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보이는데, 피고 C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르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피고 C과 망인은 혼인생활 중 자녀가 없어 1983년경 피고 B을 입양하면서 뒤늦게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였는데, 피고 B은 2016년경부터 강원도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부부가 살던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일생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등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재산 이전의 형태가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파트 동[도로명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동

1층 내지 15층 각 633.84㎡, 지하실 624.03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25487.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0.33㎡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0262분의 59.232 분.

